

##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와 전망\*

Current State and Outlook on North Korea's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이용희\*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br>임금구조의 문제점 |
| II.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정책의<br>변천과정 | V. 북한 노동자 외화획득의 재산성 검토             |
| III.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국가별 현황    | VI. 전망과 결론                         |

### I. 서론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인 대북경제제재는 북한 경제의 고립을 초래하였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있는 북한 정권은 최근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사전 연구 조사하였다. 이영형(2007)은 러시아 지역의 북한 노동자 파견현황에 대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지조사와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했다. 조명철, 김지연(2007)은 북한 노동자의 외국진출 요인, 형태 등의 추이를 분석했고 향후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형수(2013)는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외화획득 상황을 추정하였고, 1997년 이후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에 대해 분석

논문접수일 : 2016. 11. 22 수정본제출 : 2016. 12. 21 게재확정일 : 2016. 12. 21

\* 가천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교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Tel: 031-750-5196,  
E-mail: yongheelee@gachon.ac.kr

했다. Sheena Chestnut Greitens(2014) 연구보고서는 북한정권의 불법 경제활동을 통한 외화획득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했고, 이러한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외화획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철(2014)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했고, 임금 착취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했다. 윤여상, 이승주(2015)는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현황과 근무 실태 및 인권에 관하여 조사했고, 실제로 외국에 파견된 경험을 가진 탈북민들의 증언을 정리해서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오경섭(2016)은 전 세계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규모와 인권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이종석(2016)은 중국의 각 지역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와 업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앞선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집권 시기에 따른 정책 변화와 노동자 외국 파견 규모를 정리했다.

현재 발표된 많은 연구 자료들 간에 북한 노동자 파견 규모와 외화획득 총액에 대해 일치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동원하여 북한 노동자들의 각국 파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총액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 파견 경험 이 있는 탈북자 증언과 현지 노동자 임금 정보 등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1회의 연구 논문을 통해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해마다 북한 노동자 각국 파견 실황과 임금 변화에 대해 추적하여 조사하고 이를 취합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정확한 통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익의 채산성도 검토했고 외화 수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향후 통일한국 시대에 남한 내에 유입돼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북한 노동력으로 대체될 경우, 남북한의 경제적인 수익과 효과도 분석했다. 결론으로 향후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전망과 그 요인에 대해 기술하였고,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실황에 관해 통일을 대비하는 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

## II.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정책의 변천과정

북한이 외화획득을 하는 주 수입원은 지하자원이나 수자원(해산물) 수출, 노동자 외국 파견, 관광사업, 무기 거래, 남한과 외국 거주 탈북자 송금 등이 있다.<sup>1)</sup>

1) 장형수(2013), “북한의 외화수입 추정과 분석: 1991-2012”,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위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외화획득을 위한 북한의 국제 불법거래로는 술, 담배 등 밀거래, 마약 거래, 위조지폐(미국 달러) 발행, 불법 사이트 운영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거래는 종종 국제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1976년 북한 외교사절단이 스웨덴에서 불법 물품을 거래(술, 담배 밀거래)하다가 발각되어 추방당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에서도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물품 거래로 추방되었다. 마약 거래의 경우, 2010년 북한 무역국 통역담당 임모 씨가 중국 단둥에서 마약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2015년 중국 신화통신은 단둥에서 대규모의 북한 마약 밀매조직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sup>2)</sup> 위조지폐(미국 달러)에 관해서는 러시아, 루마니아,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관리들이 달러 위조지폐 거래로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sup>3)</sup>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는, 2014년 북한인 15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로 보내졌다.<sup>4)</sup> 이외에도 북한 정권은 각종 다양한 불법 거래를 통해 외화획득에 힘을 기울였지만 최근 이러한 불법 거래들이 빈번하게 적발되면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00달러 위조지폐 발행, 마약거래, 불법 사이트 운영 등에 대해 국제적인 감시가 북한에 집중되면서 이전처럼 불법거래를 통한 외화획득이 어렵게 되었다. 또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도 UN대북경제제재로 제한받게 되자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은 북한에서 외화 수입원으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 정권의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변천 과정을 통치자 집권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규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1. 김일성 집권 시기

김일성 정권 하에서 1948년 소련에 최초로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화획득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견한 경우가 많았다. 1967년 소련과 상호호협정을 맺은 후 북한은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1만 5,000여 명의 별목공들을 소련에 파견했다<sup>5)</sup>. 이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외국 파견은 확대되었다.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소련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자들

2) “중국 공안, 북한 접경 단둥서 대규모 마약조직 적발”, 연합뉴스, 2015.3.23.

3) “위폐유통, 北 ‘외교관’ 여권 특별조심”, DailyNK, 2005.12.29.

4)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북한인 적발”, YTN, 2014.7.2.

5) 북한전략센터(2013), 『북한 해외 근로자 인권개선 방안』.

을 소련에 파견했다.

1970년대에는 북한은 무상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궁,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의사당 건물 등을 건설해 주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게 대통령궁 등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이 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동맹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때부터 범죄자가 아닌 북한정권에서 직접 선발한 노동자들을 파견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직접 하였고, 또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정권에 귀속되었다. 1990년대 러시아의 푸틴 정권 시대에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러시아 업체에 귀속되었다. 이것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임금이 러시아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2. 김정일 집권 시기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외국 파견은 김정일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외화획득만을 위한 노동자 외국 파견이 대부분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별 목적노동자들을 파견하였고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을 위해서 약 45개 국가로 노동자들을 파견하였다. 파견 분야도 단순 노동인 별목과 건설 등에서 요식, 수산, 봉제, 호텔업, IT, 의료 등 다방면의 분야로 넓혀 나갔다. 외국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주도하였고,<sup>6)</sup> 노동당 소속 부서에서 관할하였다. 노동자 파견규모가 확대되면서 파견인의 선발기준이 점차 낮아졌고 뇌물 등의 로비를 통하여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도 노동자들을 파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인 외화획득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3. 김정은 집권 시기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김정은 정권 하에서 노동자 외국 파견은 더욱 확대되었다. 김정일 시기에 노동자 파견이 체계적이지 않고 산발적이며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김정은 시기에는 이러한 파견양상이 바뀌었다. 정

6) 이영형(2007),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권 2호, pp. 51-75.

부 주도로 노동자를 관리하여 외국으로 파견하던 외화획득 사업이 이제는 정부 산하기관 각각의 개별주도로 바뀌어져 갔다. 또 산발적이던 노동자 외국 파견도 이제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집중적인 중요 국가추진 사업으로 변했다. 김정은은 파견 노동자들 중에서 소수가 외국 근로현장에서 혹 탈북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파견 규모를 더욱 늘리라고 지시하였다.<sup>7)</sup> 따라서 김정일 집권 시기보다 김정은 시기에 북한노동자 외국 파견 규모는 눈에 띄게 신장되었다. 노동자 파견 사업은 산하기관 개별주도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파견 노동자들의 외화수입이 북한 당국에 귀속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갈수록 파견 분야는 다양해졌다. 예전에 없었던 태권도 교관, 군 관리 업무자, 디자인 전문가 등 전문 인력들도 파견하였다.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 시기에 노동자 외국 파견규모가 확대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UN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강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들과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통한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되었다. 둘째, 천안함 사태 이후 남한정부의 5.24조치 그리고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 남한으로부터의 외화획득이 어렵게 되었다. 셋째,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중국 내 노동자 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넷째, 러시아도 극동개발을 추진 중에 3D업종에 대한 제3국 파견 노동자들의 공급이 감소되면서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권시기별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에 대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북한 지도자 집권 시기별 노동자 외국 파견 현황

| 구분    | 김일성 집권 시기<br>1948년~1994년                                               | 김정일 집권 시기<br>1994년~2011년                                     | 김정은 집권 시기<br>2011년~현재                |
|-------|------------------------------------------------------------------------|--------------------------------------------------------------|--------------------------------------|
| 주목적   | ① 소련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br>②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증진<br>③ 러시아 채무에 대한 보상               | ① 전통적인 우방국과는 정치적인 목적과 외화획득의 목적<br>②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외화획득을 위한 목적 | 외화획득                                 |
| 파견 규모 | ① 1948년 소련에 25,000여명<br>② 1967년 소련에 15,000여명<br>③ 1970년대 아프리카에 건설인력 파견 | 2007년 기준<br>약 45,000명 근로자 파견                                 | 2016년 기준<br>약 116,600명 <sup>8)</sup> |
| 파견국   |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 45개국 <sup>9)</sup>                                           | 23개국 <sup>10)</sup>                  |

자료: 이용희(2015),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 『자유와 생명』, p.45와 관련 정보 종합 재구성

7) “김정은, ‘한두 명 탈북해도 상관없어’ 노동자 해외 파견”, DailyNK, 2015.7.17.

### Ⅲ.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국가별 현황

최근 북한의 노동자 외국 파견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중동지역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아시아지역의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 유럽의 독일, 폴란드, 아프리카의 앙골라,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등이 일정 규모 이상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들이다.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연구 발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빙성 있는 연구발표들을 살펴보면, 아산정책연구원은 2013년 기준으로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 숫자를 5만 여명으로 추정하였다.<sup>11)</sup> 2015년 미국 ABC뉴스는 북한 노동자가 40여 개국에 약 9만 명 정도 파견되었다고 하였으며<sup>12)</sup> 2016년 오경섭 부센터장(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2016, p.19.)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현황”에서 북한 노동자수를 약 1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 노동자 파견 숫자에 대한 최근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현재 세계 각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숫자를 조사해 보았다. 전체 116,600명으로 파악이 되었지만 실제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파견 노동자들을 감안한다면 116,600명 보다 조금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2〉는 전 세계 23개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 파견된 숫자는 약 100,000명으로 전체 116,600명의 86%에 해당한다.

〈표 2〉는 북한 노동자 숫자가 많은 나라들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각국 상황을 정리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숫자가 현저하게 많으므로 대륙별로 넣지 않고 별도로 집계했다.

8) 오경섭(2016),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현황”,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p.19.

9) 김정일 집권 시기 파견국: 러시아 중국 몽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리비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앙골라 세네갈 나이지리아 알제리 미주공공 적도기니 외.

10) 김정은 집권 시기 파견국: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앙골라 폴란드 몰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오만 리비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11) 신창훈·고명현(2015),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서울:아산정책연구원』, pp.21-22.

12) Sneha Shankar 저, 이원기 역(2015),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예노동”, 『뉴스위크』, 제25권 29호, p.24.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의 국가 수는 김정일 집권 시기보다 줄었지만, 노동자 파견 숫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국가별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

(단위: 명)

| 국가 및 대륙명      | 파견 노동자 수(명) |
|---------------|-------------|
| 1) 중국         | 70,000      |
| 2) 러시아        | 30,000      |
| 3) 중동         | 9,100       |
| ① 쿠웨이트        | 5,000       |
| ② 아랍에미리트      | 2,000       |
| ③ 카타르         | 1,800       |
| ④ 오만          | 300         |
| 4) 아시아(중국 제외) | 3,500       |
| ① 몽골          | 3,000       |
| ② 말레이시아       | 300         |
| ③ 미얀마         | 200         |
| 5) 유럽         | 2,000       |
| ① 독일          | 1,500       |
| ② 폴란드         | 500         |
| 6) 아프리카       | 2,000       |
| ① 앙골라         | 1,000       |
| ② 리비아         | 300         |
| ③ 나이지리아       | 200         |
| ④ 알제리         | 200         |
| ⑤ 적도기니        | 200         |
| ⑥ 에티오피아       | 100         |
| 총계 : 116,600  |             |

자료: 윤여상, 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인권정보센터; 오경섭(2016),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현황”,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p.19, 최신언론보도(M.A.D. Newswire, 연합뉴스 등), 저자 재구성.

## 1. 중국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북한정부수립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수는 김정일 집권시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김정은 집권시기에는 더 많이 증가되었다. 중국은 북한과 접경 지역이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북한 노동자 파견이 제일 쉬우며 육로이동이 가능하다. 또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6.25 혈맹국으로서 지금까지도 북한의 병풍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지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탈북)했을 때 중국 공안이 직접 개입하여 탈북자들을 색출하며 잡힌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도 북한이 중국에 많은 노동자를 보내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중국은 국가중점사업인 장지투 개발 사업(장춘, 길림, 도문)을 포함하여 여러 북-중 경제협력사업들을 북-중 국경지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동북3성 인근에 있는 값싼 북한 노동자들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3)</sup>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가 제일 많은 곳은 단둥 시이며 상주하는 북한 인력은 약 3만 명이다. 두만강 유역인 투먼 시는 조선투자합영위원회와 북한 노동자 2만 명 고용계약을 맺었다. 훈춘은 북한 노동자 3천 명을 고용했고, 엔지는 북한 IT 기술력 1,380명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중국 내 많은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최소 7만 명이고, 파악되지 않은 인원수를 감안하면 실제 파견 인력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곧 1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sup>14)</sup> 본 논문에서는 파악이 가능한 숫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중국에 파견된 북한 인력을 7만 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자 한다.

## 2. 러시아

북한은 1948년 최초로 소련에 노동자를 파견했고, 1967년 소련과 상호우호협정을 맺은 이후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가장 많은 노동자를 소련에 파견하였다. 북한

13) 한국무역협회(2014), “중국내 북한 노동자의 입국 현황과 시사점”.

14) 이종석(2016),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정책브리핑, [No. 2016-21], p.10.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이유는 크게 지리적 인접성, 전통적 우방국, 극동개발로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경지역이기에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을 파견시키기가 쉽고 파견비용도 저렴하다. 육로로 파견이 가능한 것이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극동개발은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발추진사업으로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위해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혹한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제3국의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금이 저렴하고 통제가 용이하며 양질의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2015년 4월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차관인 세레이킨은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sup>15)</sup>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은데다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sup>16)</sup>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중국, 인도 등 외국 노동자들의 감소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북한 노동자를 사용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노동사회보장부가 러시아 기업들에게 배당한 북한 노동자 쿼터는 47,279명이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이민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러시아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숫자는 34,020명이고 이들 중에 18세 이상은 33,682명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에 현재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최소 3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며, 러시아 파견 북한 인력은 3만 명으로 간주하기로 한다.<sup>17)</sup>

### 3. 중동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북한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노동력 수요가 많은 중동지역에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노동자 파견을 시작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 하에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네 나라에 약 9,1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각 나라별로는 쿠웨이트 약 5,000명, 아랍에미리트 약 2,000명, 카타르 약 1,800명, 오만 약 300명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sup>18)</sup> 중동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분야는 대부분 건설업이다. 카타르 같은 경우 건설 분야 이외에 군 관련 분야에도 북한

15)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노동력 대폭 늘릴 계획”, 연합뉴스, 2015.4.11.

16) “15)와 상동”

17) 오경섭(2016),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현황”,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p.18.

18) 윤여상·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인권정보센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북한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구리를 절도하였고, 또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는 밀주를 제조해 현지에서 중개상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술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불법행위로 적발당한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불법을 행했다고 말했다.<sup>19)</sup>

#### 4. 아시아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소규모 건설업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였다.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점차 북한 노동자 파견을 확대시켜 나갔다. 현재 확인된 나라는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이며 그 규모는 약 3,500명이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확인이 되었지만 매우 작은 규모이고 업종도 파악하기 힘들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아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종 등에 종사 중이다. 특히 몽골의 경우 북한 파견 근로자가 아시아 국가 중 월등히 많은데, 이는 몽골이 북한과 3,000명 규모의 노동자 파견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sup>20)</sup> 몽골은 북한 정부수립 이후 수교국이었으며 북한과는 전통적인 우호 국가이므로 노동자 파견도 용이했다.

#### 5. 유럽 (독일, 폴란드)

과거 냉전시대에는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방국가들에 대치하여 단합하였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동유럽 국가들에게 노동자들을 파견하였다.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등 여러 국가에 파견을 했었지만 UN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각종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중단되기 시작했다. 체코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이 파견한 보위부원들이 체코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

---

19) KOTRA(2015), “북한의 대 UAE 및 중동 인력송출 현황과 시사점”.

20) “Ulaanbaatar’s Ger District Residents to Temporarily Populate Chinese Ghost Town of Ordos, only to be replaced by workers from Pyongyang”, M.A.D. newswire, 2014.

자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2007년부터 체코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더 이상의 비자발급을 중단하였다. 실제로 체코에서 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탈북을 한 김태산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얼마이고, 북한 당국이 체코 현지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가로채는 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sup>21)</sup> 2007년 이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도 같은 이유로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했고 최근 2016년 7월부터는 몰타도 북한 노동자 비자발급을 금지했다.<sup>22)</sup>

현재 폴란드에서는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다.<sup>23)</sup> 최근 미하우 코워지에이스키 폴란드 외무부 아태국장은 독일에 1,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었다고 발표했다.<sup>24)</sup> 이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에는 약 2,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 6. 아프리카(앙골라,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프리카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정권 하에서였다. 현재는 약 2,000명 규모로 6개국에 파견되어 있다. 6.25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은 미군과 UN군의 개입으로 무력적화통일에 실패하자 반미국가와의 연대를 시도했다. 1970년대에 반미감정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갔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기념비 등을 지어주면서 정치적 우호관계를 만들어갔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한이 리비아에 무상으로 혁명박물관을 건설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UN에서 리비아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했고, 후에 원유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2014년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이나 반대를 표명했던 앙골라,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모잠비크, 수단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거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되었거나 현재 파견되어 있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표적인 수교국이었던 리비아의 경우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향후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 2015년 6월에는 리비아에 전문가로 파견됐던 북한 의사 6명이 금과 의

21) “탈북자 김태산-체코 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실태”, Voice Of America(VOA), 2006.6.9.

22) “몰타 ‘7월 후 ‘북 노동자’ 고용허가 없어”,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10.13.

23) 김규남(2016), “유럽의 북한 해외 노동자: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p.38.

24) “폴란드 외교당국자 ‘北노동자 비자발급 중단’강한 의미 전달”, 연합뉴스, 2016.6.29.

약품, 현금 등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파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25)</sup> 그러나 김일성 정권 이후, 김정일 집권부터 아프리카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무상원조를 통한 정치적인 지지확보보다는 외화획득의 실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6)</sup>

## IV.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구조의 문제점

### 1. 북한 노동자의 인권문제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권익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북한 노동자의 여권 회수, 기본권 침해, 비정상적인 계약구조 등이 있다. 모든 노동자는 파견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여권을 회수 당하고 전체가 군대 병영생활과 같은 공동생활을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외출이 제한되며 보위원의 승인 후에 상점 정도만 갈 수 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조치이다. 탈북자 김태산은 북한 노동자들은 17, 18세기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sup>27)</sup>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 중에 각종 재해를 당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현지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강제귀국 시키고 있다. 그래서 부상당한 노동자들이 강제귀국을 피하기 위해 몰래 자비로 현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참고 계속 일하다가 더 악화되어 결국은 강제귀국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sup>28)</sup> 파견국에서 노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해 보상금은 북한당국이 직접 수령한다.<sup>29)</sup> 실제로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보상금인 5만 KWD(약 1억 8천만 원)을 북한 당국에서 수령했고 유족들에게는 2천 달러(220만 원)만 전달했다.<sup>30)</sup>

25) “북한 의사 6명, 리비아서 금 밀반출하려다 체포”, 연합뉴스, 2015.6.12.

26) 최근 외화획득 실리추구를 위한 아프리카 노동자파견 사례: 2010년 6월 기준(나미비아: 대통령궁전-4,900만 달러, 영웅릉-523만 달러, 군사박물관-180만 달러, 독립기념관-1,000만 달러; 앙골라: 평화 기념비-150만 달러, 아고스띠뉴 네토 박사문화센터-4,000만 달러, 까빈 다공원-1,300만 달러; 민주공고: 농구경기장-1,200만 유로, 스포츠아카데미-400만 유로; 세네갈: 아프리카르네상스기념탑-1,000만 유로 등) ‘북한의 외화벌이, 해외착취노동’ 립일 토론문 중.

27) 윤여상·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8) “위의 책”,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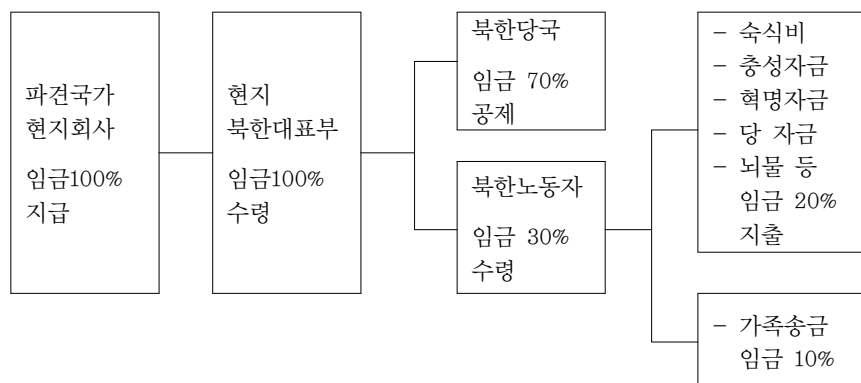
29) 립일(2014), “북한의 외화벌이 해외착취노동”, 물망초인권연구소.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국 현지 업체와 북한 노동자가 직접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현지 북한 대표부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현지 북한 대표부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제노동조약 위반사항이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당사국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현지 노동법에 위반된다.

## 2. 임금구조의 문제점

파견국가 현지 회사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100%를 현지 북한 대표부에 지급하면 북한 대표부는 북한 노동자들 임금의 70%를 공제한 후 남은 30%를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임금의 남은 30% 마저도 북한 노동자들의 현지 숙식비와 충성자금, 혁명자금, 당 자금, 북한 보위부원에게 줄 뇌물 등으로 약 20%가 지출되므로 실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약 10%만 받게 된다.<sup>31)</sup>

〈그림 1〉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령 구조



자료: 윤여상·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인권정보센터, p.77. 최근 관련 언론보도 반영 저자 재구성.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임금의 약 10%이므로 이 돈으로 북한의 민간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 당국에서 외국 파견 노동자들 임금의 70%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적자금으로 사용되기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비, 국방비<sup>32)</sup>, 고

30)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사망 위로금도 ‘꿀꺽’”, 연합뉴스, 2015.3.10.

31) 윤여상·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위 집권층들의 호화사치품 수입<sup>33)</sup>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해 상당금액의 외화획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일부분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국 파견 노동자로 선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파견국가에서 각종 명목으로 임금이 공제되어 전체 임금의 10%만 본인이 수령한다고 해도 이 금액은 북한 내부에서 본인이 받는 월급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0~5,000원이며 최근 장마당에서 미화 1달러는 8,000원에 환전되고 있다. 즉 북한 대부분 노동자의 월급은 1달러에 못 미친다. 외국에 노동자로 가서 매월 임금의 10%인 약 50달러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북한에서 받는 임금의 약 100배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북한주민들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외국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V. 북한 노동자 외화획득의 재산성 검토

### 1.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과 남한 노동자 중동 파견의 외화 획득액 비교

〈표 3〉 북한 근로자의 파견국별 연평균 임금수준 및 총임금 합계

(단위: 명, 달러)

| 파견 지역 | 파견 근로자 수 | 연평균 임금                      | 총 임금        |
|-------|----------|-----------------------------|-------------|
| 중국    | 70,000   | 3,840                       | 268,800,000 |
| 러시아   | 30,000   | 9,840                       | 295,200,000 |
| 중동    | 9,100    | 9,000                       | 81,900,000  |
| 아시아   | 3,500    | 7,800                       | 27,300,000  |
| 유럽    | 2,000    | 10,200                      | 20,400,000  |
| 아프리카  | 2,000    | 3,840                       | 7,680,000   |
| 총계    | 116,600  | (가중평균) 6,014 <sup>34)</sup> | 701,280,000 |

자료: 탈북 노동자들의 증언 토대 및 관련 언론자료 저자 정리<sup>35)</sup>

32) 국방부(2014), 국방백서 기준 수치.

33) 북한의 사치품 규모는 2008년 2억7214만 달러, 2009년 3억2253만 달러, 2010년 4억4617만 달러, 2011년 5억8482만 달러, 2012년 6억 4,586만 달러, 2013년에 6억4429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윤상현(2014), “북한의 사치품 수입실태”, 윤상현 의원실 자료.

34) 각 파견 지역별 연평균 임금의 가중평균으로 계산.

35) 윤여상·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인권정보센터 외 각종 언론

북한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외국에 파견했으며 2016년 현재 116,600명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 23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획득한 외화임금을 탈북자들의 증언과 현지 임금 기준을 토대로 하여 조사하였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1인당 약 연 3,840달러부터 많게는 약 10,200달러까지 임금을 받았으며, 가중평균으로 연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약 6,014달러이다. 북한은 약 116,600명의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연간 약 701,280,000달러 규모의 외화 수입을 올렸다.

북한의 최근 정부 예산인 약 70억 달러에 대해<sup>36)</sup> 북한 외국 노동자들의 총 임금 약 7억 달러 규모의 외화수입은 북한 정부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며,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인 약 27억 달러에 대해서는<sup>37)</sup> 약 26%에 해당되며, 2015년 북한의 GDP 약 291억 달러에 대해서는<sup>38)</sup> 약 2.4%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총 임금은 북한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이며 중요한 외화수입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만 6천 명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한 채산성을 검토해 본다면 노동자 파견 인원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4〉 남한 노동자 중동 파견 상황과 외화획득액

(단위: 명, 백만\$)

| 연도별  | 구분 | 파견인력    | 외화 획득액 |
|------|----|---------|--------|
| 1978 |    | 83,380  | 7,982  |
| 1979 |    | 104,666 | 5,958  |
| 1980 |    | 127,323 | 7,819  |
| 1981 |    | 153,699 | 12,674 |
| 1982 |    | 160,000 | 11,392 |

탈북민 인터뷰 종합 및 북한 파견 노동자 관련 외신자료: \*러시아는 러시아 측 자료기준으로 월평균 820달러로 연평균 임금 산출 \*중국은 동북삼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기준 월평균 320달러로 산출 \*중동은 건설업 위주의 파견이므로, 카타르 건설현장 임금 기준 월평균 750달러로 산출 \*아시아는 3,500명 중 몽골이 3,000명을 차지하므로 몽골에서 받는 임금 기준으로 월평균 650달러로 산출 \*아프리카는 정확한 수치가 없어, 중국에 준하는 월평균 임금 320달러로 산출 \*유럽은 동유럽국가 파견 증언자 증언기준 월평균 850달러로 산출.

36) 통일부(2016), “북한이해”, p.199.

37) KOTRA(2015), “대외무역동향”, KOCHI 자료 16-008, p.3.

38) 2015년 북한 GDP 341,367억 원을 2015년 12월 31일 환율 (US\$/원) 1173원으로 환산하여 약 291억 달러 산출(한국은행).

| 연도별 구분 | 파견인력      | 외화 획득액 |
|--------|-----------|--------|
| 1983   | 150,115   | 9,023  |
| 1984   | 118,880   | 5,911  |
| 1985   | 91,013    | 4,285  |
| 1986   | 56,260    | 1,242  |
| 합계     | 1,045,338 | 74,280 |
| 평균     | 116,149   | 8,253  |

자료: 조수종(1987), “中東建設 輸出에 대한 再照明”, 한국중동학회논총, 8권, 표3-1,3-5 저자 재구성

본 장에서는 특별히 남한 노동자의 중동파견과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의 외화 획득액을 각각 비교하고자 한다.

1970년대 남한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당시 대규모의 남한 근로인력이 중동 건설현장으로 파견되었다. <표 4>에 의하면, 남한 근로자(단순노동자와 전문 인력)가 가장 많이 파견되었던 '78년부터 '86년까지 9년 동안 연평균 116,149명의 노동자를 중동에 보냈고, 같은 기간 대략 연평균 약 82억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것은 남한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뒷받침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남한에서 중동파견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연평균 남한 근로자 숫자(116,149명)와 2016년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 숫자(116,600명)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당시 남한의 외화 획득액 82억5천만 달러와 북한의 외화 획득액 7억 달러를 비교해 볼 때 약 11.8배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남한이 중동에서 획득한 외화는 70년대와 80년대 달러 금액이며 이 달러 총액의 가치를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실질적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GNP deflator를 이용해서 <표4>의 조사기간인 1978-1986년의 중간지점인 1982년과 2015년 달러가치 변화를 살펴본다면, 1982년의 1달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13배의 실질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9)</sup> 따라서 남북한 외화획득총액의 차이는 11.8배 보다 더 큰 차이인 25.1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은 북한은 인력을 파견하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부분과 3D업종에 대해서 노동자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현지 임금도 낮았고 사업 당 부가가치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건설사업 입찰에 참가하였고, 필요한 자본과 각종 건설장비 공급 그리고 전문 인력이 투입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임으로 입찰 경쟁에서 대규모 공사들을 수주 받을 수

39) [https://www.measuringworth.com/uscompare/result.php?year\\_source=1982&amount=1&year\\_result=2016](https://www.measuringworth.com/uscompare/result.php?year_source=1982&amount=1&year_result=2016)

있었다. 따라서 남한은 중동지역에서 사업 당 매우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었다.

남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남한의 경우 중동 파견 노동자들에게 현지 임금이 전액 직접 전달되었고, 노동자들은 받은 임금의 대부분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 내의 민간 소비가 크게 창출되었고, 이에 따른 공급이 함께 증가하여 국내경제가 매우 활성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에 북한 노동자들의 현지 임금은 대부분 북한 당국에 귀속되었고,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임금의 약 10% 정도였다. 그러므로 파견 노동자 가족송금으로 인해 북한 내 민간 소비가 증가한 부분은 남한만큼 높지 않았고 북한경제에 끼친 영향력도 남한에 비해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송금된 임금 10%가 북한의 민간경제와 장마당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얘기하고 있다.<sup>40)</sup>

〈표 5〉 연도별, 직업별 파독 인력송출 현황 (남한)

(단위: 명)

|      | 광부    | 간호인력                    | 기능공 | 계      |
|------|-------|-------------------------|-----|--------|
| 1963 | 247   | 1,043<br>(독일병원협회<br>추산) | —   | 247    |
| 1964 | 806   |                         | —   | 806    |
| 1965 | 1,180 |                         | —   | 1,180  |
| 1966 | 286   | 1,227                   | —   | 1,513  |
| 1967 | 7     | 421                     | —   | 428    |
| 1968 | 3     | 91                      | —   | 94     |
| 1969 | 10    | 837                     | —   | 847    |
| 1970 | 1,305 | 1,717                   | —   | 3,022  |
| 1971 | 982   | 1,363                   | 476 | 2,821  |
| 1972 | 71    | 1,449                   | 208 | 1,728  |
| 1973 | 842   | 1,182                   | 152 | 2,176  |
| 1974 | 1,088 | 1,206                   | 92  | 2,386  |
| 1975 | —     | 459                     | 3   | 462    |
| 1976 | 314   | 62                      | —   | 376    |
| 1977 | 795   | —                       | —   | 795    |
| 계    | 7,936 | 11,057                  | 931 | 19,924 |

출처 : 윤용선(2014),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의 미시사: 동원인가, 선택인가?”,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 제81집, p. 433.

40) 탈북자 대담. 2016.11.10.

〈표 6〉 파독근로자 송금액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 달러)

| 연도   | GNP (불변가격) | 파독 근로자 송금액 | GNP 대비 송금액 비중(%) |
|------|------------|------------|------------------|
| 1964 | 2,900,000  | 112        | 0.003            |
| 1965 | 3,000,000  | 2,734      | 0.09             |
| 1966 | 3,700,000  | 4,779      | 0.12             |
| 1967 | 4,300,000  | 5,791      | 0.13             |
| 1968 | 5,200,000  | 2,417      | 0.04             |
| 1969 | 6,600,000  | 1,246      | 0.01             |
| 1970 | 7,800,000  | 3,338      | 0.04             |
| 1971 | 9,500,000  | 6,593      | 0.06             |
| 1972 | 10,700,000 | 8,311      | 0.07             |
| 1973 | 13,700,000 | 14,162     | 0.10             |
| 1974 | 19,200,000 | 24,479     | 0.12             |
| 1975 | 21,200,000 | 27,680     | 0.13             |
| 합계   |            | 101,372    |                  |

출처: 권혁철(2015), “파독의 국가경제적 의미”, 자유경제원, p. 7.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했던 노동력 해외 파견은 중동 파견 이전에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추진되었던 서독파견을 기점으로 한다.

1963년부터 남한은 정부 주도하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서독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3년 단기근무 조건으로 파견되었지만 3년이 지난 후에 일부는 귀국하지 않고 서독에 남아서 연장 근무를 하였고 어떤 이들은 서독에 장기체류하며 귀화하기도 하였다.<sup>41)</sup> 1964년 서독에 파견된 근로자의 당시 한 달 실 수령액이 약 66,360원(789.62 마르크)이었다.<sup>42)</sup> 당시 고정환율로 환산하면 약 260달러에 해당한다. 총 임금에서 세금, 연금, 건강보험, 공과금 등 20~25% 정도 공제되었다고 가정할 때 실제 월 임금은 약 340달러이며 연 약 4,080달러로 추정된다. GNP deflator를 이용해서 1964년과 2015년 사이에 달러가치 변화를 살펴본다면, 1964년의 1달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5.99배의 실질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연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4,440달러가 된다.<sup>43)</sup>

41) 윤용선(2014),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의 미시사: 동원인가, 선택인가?”,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 제81집, p. 438.

42) 권혁철(2015), “파독의 국가경제적 의미”, 자유경제원, p. 4.

43) [https://www.measuringworth.com/uscompare/result.php?year\\_source=1982&amount=1](https://www.measuringworth.com/uscompare/result.php?year_source=1982&amount=1)

서독의 경우 임금전액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노동자들은 현지 생활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한국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계약기간 3년 이후에도 독일에 장기체류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시작했다.

서독파견 인력으로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5년 동안 연인원 19,924명이 파견되었다. 적은 규모의 노동력이었지만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송금액이 1973년부터는 국내 GNP의 0.1%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300만 달러였는데 서독 파견 노동자들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이 1965-67년 3년 동안에만 1,330만 달러가 넘어섬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또 이러한 송금액은 당시 남한 총 수출액 대비 1.8%에 해당되므로 만성 적자였던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sup>44)</sup>

북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남한은 노동자 파견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진국 진출이 가능했기에 소규모 노동력으로도 훨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수 있었다.

## 2. 남한 내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와의 임금비교

<표 7> 2015년 월평균 임금수준별 외국인 임금근로자 (남한)

(단위: 천 명, %)

| 구분        | 외국인<br>임금근로자 | 100만원<br>미만 | 100만원<br>~200만원 미만 | 200만원<br>~300만원 미만 | 300만원<br>이상 |
|-----------|--------------|-------------|--------------------|--------------------|-------------|
| 외국인<br>합계 | 899<br>(100) | 44<br>(5)   | 477<br>(53)        | 308<br>(34)        | 70<br>(8)   |

자료: 2015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

남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기준 98만 6천 명이다.<sup>45)</sup> 이들 중에서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약 8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약 189만 원이었고 연평균 임금은 약 2,268만 원이다.<sup>46)</sup> 2015년 10

&year\_result=2016

44) 권혁철(2015), “파독의 국가경제적 의미”, 자유경제원, p.6.

45) 2015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서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98만 6천 명이다.

46) 외국인 월평균임금액 표 중 100만 원 미만(5%)과 300만 원 이상(8%)의 수치는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5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34%)의 표본만 고려하여 월평균임금액을 가중평균으로 계산.

월 15일 기준 달러환율은 1,127원<sup>47)</sup>이고 이 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124달러이다. 이 금액은 북한의 외국 파견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인 6,014달러의 약 3.3배가 된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에 노동자들을 파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화획득을 했을 것이다. 북한이 노동자들을 여러 나라에 파견할 때 채산성 여부를 검토하고 파견한다면 같은 인력 규모로도 더 많은 외화획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3D업종에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OECD국가들 같은 선진국에서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이 확보되고, 또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 속에서 초과노동시간에 잔업수당을 받도록 현지 북한 대표부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면 남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남한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20,124달러는 초과 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유럽과 중동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현지 근로자들의 법적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수당이 확보되도록 현지 북한 대표부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상황 속에서도 외화획득 총액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126만 원이다. 만약에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에서 일할 경우 현재 외국에서 노동하듯이 주 40시간 정규 근무시간 외에 주 20시간 초과노동을 한다면 최저임금 시급인 6,030원의 1.5배인 9,045원이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적용되므로 월수입은 약 205만 원이 되고 연평균 임금은 약 21,820달러가 된다. 이는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약 3.6배이다.

통일이 되거나 통일에 준하는 상황이 되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남한 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할 경우 남한과 북한 모두는 많은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인 북한 노동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한 노동자의 경우 첫째는 언어의 장벽이 없고, 둘째는 외국 노동자보다 남한의 음식, 기후, 문화, 주거환경 등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현지 적응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셋째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육로를 통해서 남한으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파견 노동자 임금이 지금보다 약 3.6배 증가되며 현지적응도 외국보다 쉽고 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므로 이동비용도 제일 저렴하다. 그리고

47) 2015년 10월 15일 달러 매매기준율 1달러=1,127원.

남한에 거주하는 외국 노동자 98만 6천 명은 현재 외국에 파견중인 북한 노동자 116,600명의 약 8.5배이다. 북한에서 파견 가능한 노동자의 수는 충분히 많으므로, 만약에 98만 6천 명이 북한 노동자로 대체된다면 북한에서 얻게 되는 외화수입은 현재 약 7억 달러의 약 30.6배인 214억 2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sup>48)</sup> 이 금액은 북한 정부 1년 예산 (70억 달러)의 약 3배 규모<sup>49)</sup>이며, 2015년 북한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7.9배이며, 2015년 북한 GDP(291억 달러)의 74%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재정 지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거나 남북한 경제협력이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서 남한 내 외국 근로자들이 북한 노동자들로 대체될 경우,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큰 경제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 VI. 전망과 결론

### 1.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에 대한 전망

첫째,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는 국가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UN 총회에서 북한인권개선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 이후 12년 연속 통과되었지만 올해 결의안에는 인권유린의 최고책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명시했고, 그리고 특별히 인권유린의 범주 안에 외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이 최초로 포함되었다.<sup>50)</sup> 이것은 향후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11월 16일 EU의회에서는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EU법률에 위반되며, 폴란드 외 다른 EU회원국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에 관련하여 사법조치를 촉구하는 발의가 있었다.<sup>51)</sup>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유럽 선진국들에게 노동자들을 파견하여 현지의 높은 임금을 통해 외화획득을 확대하려는 계획에는 큰 차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여론이 악화되면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계속 대두된다면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는 나라는 UN과 EU와 미국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들로

48) 산출근거: 986,000(명) × 20,124(달러) = 19,842,264,000(달러)

49) 통일부(2016), “북한 이해”.

50)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김정은 처벌’ 명확화, MBN뉴스, 2016.11.16.

51) EU의원, 북 노동자 관련 폴란드 사법처리 촉구,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11.16.

제한될 것이다. 즉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반미 성향이 강한 중동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최대 45개 국가에서 현재는 약 23개국 수준이며 앞으로는 10여개 국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둘째,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 숫자는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UN대북제재는 갈수록 강화되므로 외국과의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또 이전처럼 불법거래(마약, 위폐발행 등)를 통한 외화획득도 국제적인 감시를 받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이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고 자본이나 기술력 없이도 외화획득이 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외화획득 수단이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침체 속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획득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취임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경계선을 엄중 단속하고 탈북자들을 엄벌에 처했지만 외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현지에서 혹 탈북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노동자들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탈북을 막기 위해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면 북한 경제를 지탱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외화 조달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세레이킨 차관이 북한은 무제한으로 노동자 파견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갈수록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정상적인 무역거래도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수입원이며 정책 사업이므로 북한정권은 가능한 최대로 노동자 파견을 늘려갈 것이다.

셋째, 북한은 전문가 외국 파견을 늘려갈 것이며, 노동력과 기술력이 융합된 건설 프로젝트를 입찰하는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단순 노동자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더 많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전문가 파견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IT 인력들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파견하고 있으며 갈수록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 디자이너, 요리사 등 다양한 직종 종사자들의 파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V장에서 보았듯이 중동 파견 남한 노동자들과 외국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획득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장기적으로 기술력이 높지 않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순 노동력 제공만이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 전체를 수주하여 총괄 공사를 맡아서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외화획득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 2. 남한 정부가 해야 할 일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부각되는 북한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 파견 규모나 이를 통한 외화획득 총액에 대한 연구 발표에 매우 큰 편차가 있었다. 2013년 외교부 국회제출 자료에서 북한 노동자 규모는 약 46,000명 이었고, 지난 9월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약 120,000명으로 추산되었다. 외화 획득액의 규모도 작게는 약 2억 달러에서부터 많게는 23억 달러까지 추정치가 다양하다.

통일을 대비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 있어 정확한 통계를 갖지 못한다면 이는 통일정책에 큰 취약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KOTRA나 해외 공관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파견 규모나 벌어들이는 외화 총액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취합한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해마다 북한 노동자 각국 파견 숫자와 외화 획득액에 대한 변화를 조사해 나감으로 그 추세를 정확히 인지할뿐더러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을 연구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향후 남북한 관계가 통일에 준하는 상황이 되어 남북한 경제협력이 자유롭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의 노동자 파견은 남한 경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북한 정권의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과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통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철(2015), 파독의 국가경제적 의미, 자유경제원, pp.4-7.
- 국방부(2014) 국방백서.
- 김규남(2016), 유럽의 북한 해외 노동자: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p.38.
- 김승철(2014), 북한 해외파견근로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물망초인권연구소.
- 림일(2014), 토론문-북한의 외화벌이 해외착취노동, 물망초인권연구소.
- 북한전략센터(2013), 북한 해외 근로자 인권개선 방안.
- 신창훈·고명현(2015),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 아산정책연구원, pp.21-22.
- 오경섭(2016),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현황,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p.19.
- 윤상현(2014), 북한의 사치품 수입실태, 윤상현 의원실 자료.
- 윤여상·이승주(2015),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인권정보센터.
- 윤용선(2014),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의 미시사: 동원인가, 선택인가?,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 제81집, pp.433, 438.
- 이영형(2007),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권 2호, pp.51-75.
- 이용희(2015),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한 외화획득, 자유와 생명, p.45.
- 이종석(2016),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정책브리핑, No. 2016-21, p.10.
- 장형수(201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1991-2012,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 조명철·김지연(2007),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7권 31호.
- 조수중(1987), 中東建設 輸出에 대한 再照明, 한국중동학회논총, 8권.
- 통계청(2015), 외국인 고용조사 보고서.
- 통일부(2016), 북한이해, p.199.
- 한국무역협회(2014), 중국내 북한 노동자의 입국 현황과 시사점.
- KOTRA(2015), 북한의 대 UAE 및 중동 인력송출 현황과 시사점.
- KOTRA(2015), 대외무역동향, KOCHI 자료 16-008, p.3.
- Sheena Chestnut Greitens(2014), 북한 불법 외화벌이 활동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16권 6호, pp.43-49.
- Sneha Shankar 저, 이원기 역(2015),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예노동, 뉴스위크, 제25권 29호, p.24.

- 『연합뉴스』, “중국 공안, 북한 접경 단둥서 대규모 마약조직 적발”,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090800097.HTML>
- \_\_\_\_\_,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노동력 대폭 늘릴 계획”,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1/0200000000AKR20150411016951014.HTML>
- \_\_\_\_\_, “북한, 러시아 파견 노동자 4만7천여 명”,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30/0200000000AKR20150430019000014.HTML>
- \_\_\_\_\_, “북한 의사 6명, 리비아서 금 밀반출하려다 체포”,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2/0200000000AKR20150612037300014.HTML>
- \_\_\_\_\_,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사망 위로금도 '끌꺼'”,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0/0200000000AKR20150310087500014.HTML>
- \_\_\_\_\_, “폴란드 외교당국자 ‘北노동자 비자발급 중단…강한 의미 전달’”, 2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164200014.HTML>
- 『자유아시아방송(RFA)』, “몰타 “7월 후 ‘북 노동자’ 고용허가 없어”, 2016.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workers-10132016143642.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workers-10132016143642.html)
- \_\_\_\_\_, “EU의원, 북 노동자 관련 폴란드 사법처리 촉구”, 2016.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jw-11162016152732.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jw-11162016152732.html)
- 『DailyNK』, “위폐유통, 北 ‘외교관’ 여권 특별조심”, 2005.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6318>
- \_\_\_\_\_, “김정은, ‘한두 명 탈북해도 상관없어’노동자 해외 파견”, 2015.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5002&num=106528>
- 『MBN뉴스』,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김정은 처벌’ 명확화”, 201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3064627](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3064627)
- 『VOA』, “탈북자 김태산-체코 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실태”, 2006.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6-06-09-voa16-91201454/1296138.html>
- 『YTN』,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북한인 적발”, 2014.  
[http://www.ytn.co.kr/\\_ln/0101\\_201407022324490053](http://www.ytn.co.kr/_ln/0101_201407022324490053)
- 『M.A.D. newswire』, “*Ulaanbaatar's Ger District Residents to Temporarily Populate Chinese Ghost Town of Ordos, only to be replaced by workers from Pyongyang*”, 2014.

##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와 전망

이 용 희

### 국문초록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북한 경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북한 정권은 최근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집권 시기에 따른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각국 파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총액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자 증언과 현지 노동자 임금 정보 등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익의 채산성도 검토해 보았다. 향후 통일한국 시대에 남한 내에 유입돼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북한 노동력으로 대체될 경우, 남북한의 경제적인 수익과 효과도 분석했다.

결론으로 향후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전망과 그 요인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제어: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 외화 획득액,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의 문제점과 전망

경제학 분류번호 : F0, O1, O5

## Current State and Outlook on North Korea's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Yong Hee Lee

### Abstract

Due to North Korea's recurring nuclear tests, the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by the United Nations has been strengthened and North Korea's economic isolation intensified. Continuing economic depression,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dispatching workers abroad in search for financial breakthroughs.

This article presents research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n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and summarizes the policy change along the ruling periods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Kim Jung-Eun. Efforts were made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number of laborers dispatched to individual nations, and estimate the total foreign income of the dispatched laborers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local wages provid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exploitations of labor human right and wage as international issues along with the profitability of foreign income earned by North Korean labors dispatched abroad were considered. Profitability and effects on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y were analyzed for the case when the current foreign laborers in South Korea will be replaced with North Korean labor force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future. As a conclusion, outlook on North Korean future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and its causes were presented.

Keywords: North Korea's foreign labor dispatch policy, foreign income, problems and outlook on North Korea foreign labor dispatch

JEL Classification: F0, O1, O5

